등록번호	의회사무국-6824
등록일자	2014.12.23.
결재일자	2014.12.23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의정홍보팀장	의회사무국장		
이완범	최동명	12/23 정옥진		
협 조				

2015년도 기존건축물 내진보강대책



서 대 문 구 의회사무국

2015년도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대책

I 추진배경

□추진배정(목적)

- ○『지진재해대책법』제15조.16조 및 기존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 계획(2011~2015)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수립. 추진필요
- 내진설계가 방영되지 않았거나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에 미달된 기존 공공시설 물의 내진보강을 통한 국가주요시설의 내진성능 학보로 지진발생시 피해저감

□ 기본방향

-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(2011~2015)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수립 추
 - ※ 내진보강대책 매년12월 31일까지 수립(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
- 내진보강은 현재 시설물별 만족하도록 내진설계기준을 만족하도록 추진

Ⅱ 내진보강 추진계획

- □ 내진보강 대상시설물 현황
 - 공공건축물: 건축물 1개소
- □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추진계획
 - 기본적으로 현행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을 설계기준에 요구하는 내진성능과 동등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진보강 수행
 - 건축물 소요예산을 확보, 내진보강 대상.방법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안전점 검사 내진성능평가 시행

Ⅲ 내진보강 건축물 세부추진계획

□ 내진성능확보 현황

(단위:개소)

구분		내진설계	내진적용	내진 미적용				내진비율	
		대상		소계	내진양호	내진보강 완료	내진보강 필요	(%)	비고
계									
건축물	건축	1		1			1	20	

□ 2015년도 내진성능확보계획

- 내진성능평가
 - -2015년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시 내진성능평가 여부 평가
 - -평가후 필요시 건축물 내진성능평가시행
- 내진성능보강
 - -내진보강계획없음
 - -법정외 건축물로 내진성능평가에 따른 보강계획 수립

□ 연차별 내진보강 계획

○ 1단계 내진보강 계획(11년~15년):추진계획 없음 ※내진성능평가에 의거 건축물 상태에 따라 병경

○향후내진보강 계획

(단위:개소.백만원)

구분		향후 내진보강 계획					비고	
↑ 世			총계	2단계(16~17)	3단계(18~19	4단계(20~21	5단계(22~	1 112
계		개소	1				1	
		예산	50					